

제안요청서(재공고)

사업명	식품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 개선 연구
-----	--------------------------

2016. 5.



사업담당	정보화사업본부 정보기획실	김기주 실장 044-861-8740
		이치화 과장 044-861-8743
계약담당	경영기획본부 창조행정실	김태용 대리 044-861-8725

목 차

I.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2. 입찰 관련사항	1
3. 제출서류	4
4. 제안서의 효력	5
5. 유의사항	5

II. 제안요청 내역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7
2. 과업의 개요	8
3. 과업의 내용	8
4. 추진체계 및 일정	D
5. 기대효과	11
6. 행정사항	11
7. 보안 및 기타사항	B

III. 제안서 작성요령 등

1. 제안서 작성요령	14
2. 제안서 평가	15
3. 입찰 관련서식	15
[참고] 식품산업 신직업(군) 등	16

I.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 개요

- 용역명 : 『식품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 개선 연구』
- 용역내용 : “II. 제안요청 내역”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기초가격 : 40백만원(부가세 포함)

* 동 용역은 용역완료 후 계약금액 범위 내 집행내역 제출

나.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에 명기된 업체의 전문 인력은 교체할 수 없으며 전문인력의 이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입찰신청서(사업신청서)의 별첨자료로 첨부할 것 (참여인력 이력사항과 경력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납부 이력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본 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인력으로 전담 수행팀을 구성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자(단, 비영리 법인의 경우는 해당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단,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해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이 경우 8번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항목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영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 공동수급체 중 대표는 구성원보다 반드시 참여 비율이 높아야 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나라장터에서만 구성 가능함
- 위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 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나.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9.2 1.)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배점비율(100점) : 기술평가비율(90점환산) + 가격평가비율(10점환산)
 - 제안서 평가 기술점수(10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라.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3. 제출서류

제출서류	부수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공동수급시 대표자만 작성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공고금액의 5%, 90일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업종코드 : 116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유효기간내
연구용역 실적 증명서	미제출	단, 제안요청서내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후 첨부(최근 3년간 실적)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부	최근 1년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공동수급시 전원, 전일까지 소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공동수급시 전원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공동수급시 전원
인감증명서	각 1부	공동수급시 전원
청렴서약서	각 1부	공동수급시 전원
입찰참가유의서	1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각 1부	공공기관 입찰용
참여인력 현황(재직증명서 등)	미제출	참여인력 전원 제안서에 포함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1부	입찰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제출
제안서	각 7부	
제안서 CD	1 copy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안서, 제안서 CD외 제출서류는 공동수급시 전원 제출

4. 제안서의 효력

-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유의사항

-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친환경상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 불허)
-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차.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 발표

카.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타. 발표에 참여하는 인력은 투입인력 중 발표자 포함 3명 이내로 제한하며, 참가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파. 사업완료후 정산 서류 일체 제출(관련서류 일체) 하여야 함

하. 문의처

- 사업담당 : 농정원 정보기획실 이치화 과장(044-861-8743)
- 계약담당 : 농정원 창조행정실 김태용 대리(044-861-8725)

II. 제안요청내역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3년 이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표준화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 전 산업에 걸쳐 857개 직무분야를 대상으로 ‘13년 240개의 NCS 개발, ’14년 288개의 신규, 269개의 보완개발
- 식품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의 경우 음식서비스, 식품가공의 2개 대분류, 3개 중분류, 7개 소분류, 29개 세분류, 409개의 능력단위가 개발된 상황
 - 현재 분류체계 중 음식서비스와 식품가공 대분류 내 각 중분류, 세분류는 일(직무)의 크기와 성격을 고려할 때 편차가 크며, 실제 식품산업현장 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훈련에 활용하기에는 한계
 - * 기존 식품산업 분류체계는 새롭게 부상하는 신직업(군)의 다양성과 특성 미반영
 - * 식품산업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kfoodjob.kr) 구인·구직정보 등록·관리시 미매칭 등
 - ‘15년부터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새롭게 부상하는 신직업(군) 등 NCS 활용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개선요구 반영 필요
 - * 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교육 강화 및 NCS기반 교육과정 운용 요구 대비 필요
 - * 식품정책 개발을 위한 각종 통계확보에 기존 분류체계에서는 일부 직무누락

등 애로 해소 필요

- 식품분야 산업, 인력, 정책 요구분석 등을 통해 식품 분야 산업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분류체계 개선 대응 필요

2. 과업 개요

추진 목적

- ◇ 식품분야 직무능력 분류체계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하여 식품분야 NCS 개편(안) 마련

가. 과업명 : 『식품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 개선 연구』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다.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세 포함)

* 동 용역은 용역완료 후 계약금액 범위 내 집행내역 제출

3. 과업 내용

① 식품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편을 위한 환경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식품분야 최신 정책동향과 인력현황 및 전망 분석, 국내외 식품분야 NCS 분류체계 분석, 식품산업 현장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이슈사항 도출

*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식품 관련 기관 및 단체, 교육훈련기관, 자격기관, 기업 담당자,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실시

② 식품산업 특성을 반영한 식품분야 NCS 분류체계 개편(안) 마련

- 식품산업 특성을 반영한 직업군, 기능성, 고령화, 친환경, 6차 산업, ICT융복합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식품분야 NCS 개편방안 마련

* 산업규모 및 비중이 높거나 새롭게 부상하는 신직업(군), 산업현장 요구 등 반영

- 식품분야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식품산업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kfoodjob.kr) 구인·구직 정보 등록·관리 등 활용방안 및 시사점 도출

*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정보 관리, 식품정책 개발을 위한 각종 통계확보 등

[연구절차 및 방법(예시)]



[최종보고서 목차(예시)]

- I. 연구개요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절차 및 방법
- II. NCS 관련 사례 및 동향분석
 - 1. 식품분야 NCS 현행 분류체계
 - 2. 식품분야 NCS 분류체계 해외사례
 - 3. 식품분야 정책동향 분석
 - 4. 식품분야 자격 개편 동향 분석
- III. 식품현황 지표 및 식품교육 분석
 - 1. 식품현황 지표 분석
 - 2. 식품분야 신직업(군) 분석 * <별첨5> 참조
 - 3. 식품분야 교육 현황
- IV. NCS 분류체계 개편 방향 및 의견수렴
 - 1. 분류체계 개편 방향(안) 설정
 - 2. 전문가 의견 수렴 및 1차 분류체계 개선(안)
 - 3. 최종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V. 식품분야 NCS 분류체계 개편 추진 방안
 - 1. 식품분야 NCS 분류체계 개편 방안
 - 2. 주요 통계 및 기타 지표 분류체계와의 연계성
 - 3. 식품분야 NCS 활용 방안
 - 4. 분류체계 개편 요구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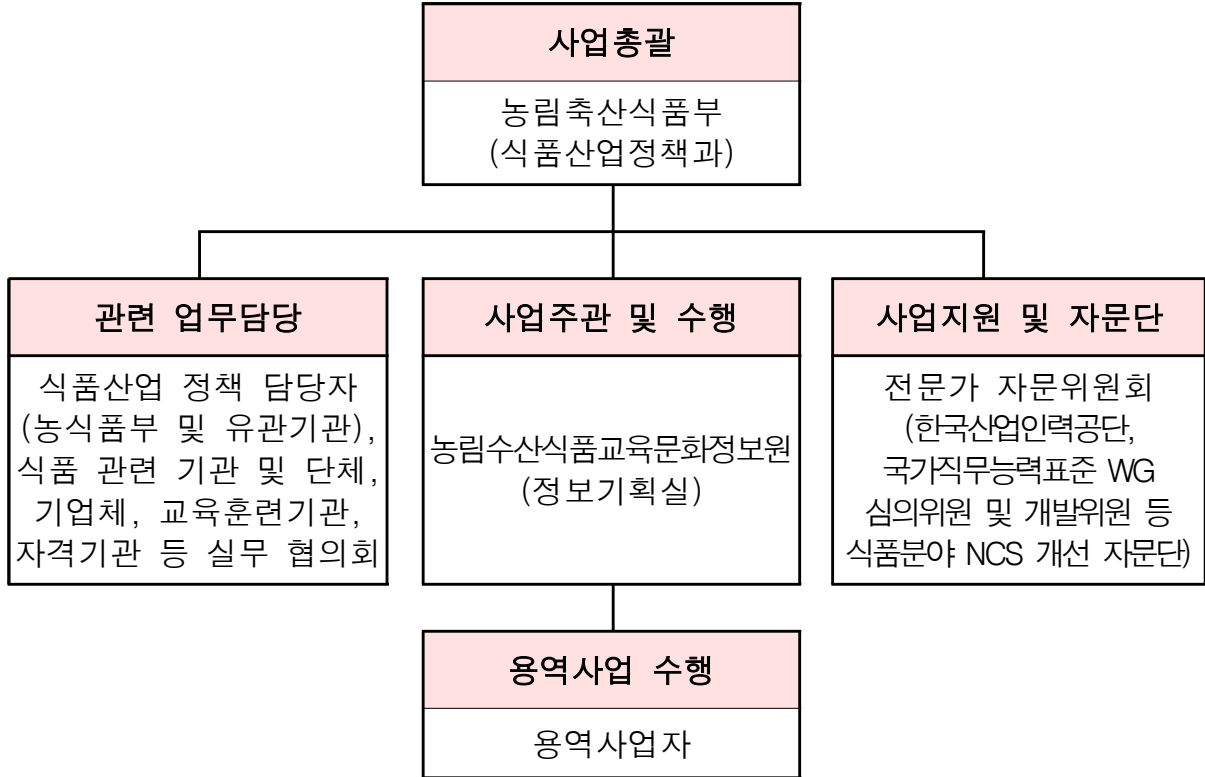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NCS 분류체계 개선 기준]

- ◆ 기본적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를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산업이 아닌 직무를 중심으로 구성 조정 원칙
- ◆ 산업분류(활동)의 기준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 분야가 아닌 직무별 분류를 우선시 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는 미미하나 향후 급증하거나 중요한 분야는 편입 가능
- ◆ NCS 세분류 명칭은 구체적인 수행직무(하는 일)로 구성

- ▶ 산업이 아닌 직무를 중심으로 구성. 즉, 산업분류(활동)의 기준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 분야가 아닌 직무별 분류를 우선
- ▶ 직무유형이 반영된 고용직업분류(KECO 분류)의 분류 구성체계를 따르나, NCS 세분류의 한국고용직업분류 세분류 수준을 뛰어넘는 통합은 지양하며, NCS 세분류 수준과 범위는 가능한 KECO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주 직무기준에 맞춰 조정
- ▶ 재화, 서비스별 분류가 노동시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산업별 분류를 따르나, 이는 해당 NCS에서 제시하는 직무능력 보유 여부가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개발경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
- ▶ 노동시장에서 현재 수요는 미미하나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는 분류상에 편입 (해외사례 혹은 인력수급전망 등)
- ▶ NCS 세분류 명칭은 구체적 수행직무(하는 일)를 기준으로 구성(예시, 설계, 설치, 정비, 운영, 디자인 등)

4.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추진체계



나. 추진일정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업무구분	월별 추진일정			
	M	M+1	M+2	M+3
○ 사업공고 및 제안접수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환경분석 및 시사점 도출		■	■	
○ 개편 방향 및 개선(안) 등 의견수렴		■	■	■
○ 개편 방안 및 활용방안 등 전문가 자문			■	■
○ 식품분야 NCS 개편(안) 마련			■	■
○ 착수보고		■		
○ 중간보고			■	
○ 완료보고				■

※ 상기 추진일정은 계약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대효과

- 가. 식품분야 NCS 개편을 위한 환경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식품산업 특성 및 최근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분류체계 개편(안) 마련
- 나. 식품분야 NCS 개편을 통해 식품산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자격의 개선·신설·개정 등 활용 확대
- 다. 식품정책 개발을 위한 각종 통계확보를 위한 직무누락 해소 및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교육 강화 등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에 기여

6.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용역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수행체계 및 방향, 월별 분야별 수행계획·방법 및 추진일정
 - 분야별 참여인력 인적구성 및 개인별 업무역할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분야별 전문가 인적사항 및 자문방법 등 포함)

나.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보고회 개최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과제 추진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자문위원회는 학계, 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 자문위원회 위원은 용역계약자가 선정하여 위촉하되,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구성
- 용역수행기관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3회 이상의 보고회를 개최하여 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10일 이전
- 보고회 개최 공문 및 자료는 1주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월별 과업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담회를 감독관의 요청 또는 협의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보고회 및 간담회에 참여한 위원 등에 지급되는 수당 등 제반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다. 보고서 등의 작성·제출

- 본 용역의 성과는 자문회의 등의 논의내용을 반영하고, 계약만료 2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최종 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라.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제수행 범위내의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계약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용역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정상적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하자책임 관계

- 용역계약자는 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7. 보안 및 기타사항

가. 보안사항

- 용역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기관의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용역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됨
 - 연구수행과정에 수집한 자료, 용역발주기관에 제출된 자료 및 보고서에 대한 소유권은 용역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 공동 귀속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적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준함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필요시 발주처는 세부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수행자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나.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의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함
- 용역계약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시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서상의 이견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약 쌍방간의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함
- 최종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편집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다.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요약본 포함) 20부, 보고서가 수록된 CD 2매

III. 제안서 작성요령 등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와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다음의 사항이 충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할 것(훈글 2002로 작성, A4 50 쪽 이내, 신명태명조 14, 줄간격 180%, 서식하단 중앙부 쪽수 기재)

작성항목(목차)	작성방법
I. 과업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3. 연구수행 전략 4. 연구수행 특징 및 장점	○ 제안기관은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등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기관(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관련분야 주요 연구실적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III. 과업 수행부문	○ 과업 수행내용 제시(과업내용 참조)
IV. 사업 관리방안 1. 추진계획 2. 연구조직 및 업무분장 3. 연구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추진 일정, 산출물, 제출시기, 보고방안, 연구비 소요명세표(총괄, 비목별) 등 제시 ○ 과업 수행조직 구성 및 각각의 업무분장 ○ 연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과 특히 부문별 연구책임자에 대한 경력 및 연구실적
V.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 연구실적의 경우 연구제목 뿐만 아니라, 주요내용, 연구기간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용역업체의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비 소요명세표는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할 것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원칙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나.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점수(90점 환산)와 가격평가점수(10점 환산)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1. 사업수행계획	30	
	① 과업의 이해정도	5	
	②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5	
	③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의 적정성	10	
	④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10	
	2. 기술 또는 연구 인력	25	
	① 해당분야 인력보유 정도	10	
	② 인력구성원의 해당분야 연구 참여경력	15	
	3.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사업수행실적	20	
	4.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25	
	기술 능력평가 총점		100 (90점 환산)
	입찰 가격평가 총점		100 (10점 환산)
합 계		200 (100점환산)	

3. 입찰 관련서식 : 붙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원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6.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대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나.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

상 호 :
대 표 자 :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하

입찰참가유의서

입찰공고 (지명)번호	호	제안사업명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제안사가 계약업체로 선정 시 준수 사항

- 우리 원이 제안요청하고 제안사가 제안서를 통하여 수용한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우리 원으로 귀속되며, 타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 원의 허가를 득해야 함.
- 기타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요구 조건을 수용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원에서 제시하는 위의 조건들을 모두 수락합니다.

2016. . . .

신청인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귀하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u>주요연혁</u>			

[서식 6]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7] 주요사업실적

구분	연도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합 계		총 실적건수 : ○ 건 / 총 실적금액 : ○○ 백만원					

-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제안업무와 직접관련된 것만 기재
- 2) 구분란은 년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 ※ 3) “합계”란은 용역의 총 실적 건수 및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
- 4) 용역개요는 참여 사업에 대해 간략히 기재
- 5) 기재 내용에 대해 발주처가 확인한 실적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서식 7-1] 유사분야 사업실적

○ 용역건별 내역

용역명				
발주자				
용역기간	착수일 완료일(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술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 사업별 실적증명원 필수 제출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업무구분		참여기간			참여율	%	
역할 및 업무내용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업무구분	역할 및 업무내용	비고

- 업무구분 : 사업관리, 행정지원, 기술연수진행, 프로그램개발 등
- 역할 및 담당업무 :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해당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
- 투입인력의 전체 이력 중 본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토록 하며 담당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

[서식 9]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금 액 (천원)	산 출 내 역(원)
인건비(A)		
재료비 및 경비(B)		
소 계(C=A+ B)		
일반관리비(D)		
이 윤(E)		
소 계(F)		
부가가치세(G)		
합 계 (H=F+ G)		

-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예산회계법 회계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
- ※ 제안서에는 가격산출내역서를 작성지침에 따라 반드시 기재(단, 관련금액은 전자입찰서와 상이 하여도 무방함)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는 「_____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01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원장 귀하

보 안 각 서(대표자)

본인은 ____년 __월 __일부로 _____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해당 팀장)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 안 각 서(참여인력)

본인은 ____년 __월 __일부로 _____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여자)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등)

구 분	세 부 내 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개인정보 수집항목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문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입찰참가 제한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경우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동의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6. . .

성명

서명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 누출금지 정보 >>

-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②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 ⑧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 ⑩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 ⑪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⑫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⑬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보안 요구사항-첨부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예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예시

- ① 사업자는 농정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농정원에 납부한다.
-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농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책임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책임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책임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정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

[보안요구사항-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	총 사업비의 3 %	총 사업비의 1 %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요구사항-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예시

- ① 정보화사업 추진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 공무원징계령 정보보안관련 위규유형별 문책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의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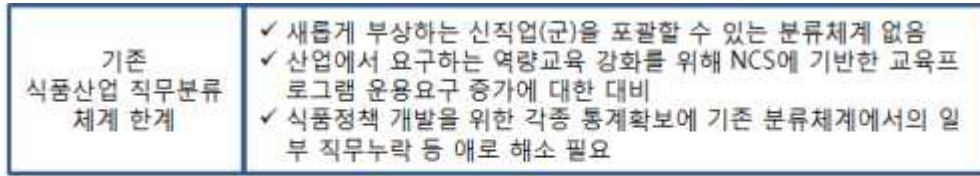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참고 1

식품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검토 절차 예시

[검토 절차 예시]



<국가직무표준(NCS) 기반의 식품산업 직무분류 체계 검토 절차>



[기존 NCS 체계 비교분석 및 검토 예시]

구분	한국고용직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신직업(군) 포함여부
구분기준	요구되는 지식 (직능유형)	직무수행능력 (직능수준)	직무수행 요구능력 (능력&수준)	
총 직업분류	24개	10개	24개	
식품 분야	대분류	4개 영역 (서비스 종사자)	2개 영역 (음식서비스) (식품가공)	신직업(군)모두 포함
	중분류	5개 (서비스 종사자)	3개 (음료조리서비스) (식품가공) (제과제빵)	신직업(군) 모두 포함
소/세분류	25개 소분류 348개 세분류 (한식주방장 등)	8개 소분류 23개 세분류 322개 세세분류 (한식조리사 등)	7개 소분류 29개 세분류 409개 능력단위 (한식조리실무 등)	신직업(군)이 대부분 기타에 포함되거나, 미포함(누락)되는 경우 발생

참고 2

식품산업 직무분류체계 개선(안) 예시

◆ 식품산업을 대표하기 위한 명칭, 유망 신직업군 반영 등 종합분석 검토·개선

구분	현재	개선(안)	비고
대분류	2개 대분류 • 음식서비스 • 식품가공	2개 유지, 명칭개선 • 음식(식품)서비스 • 식품개발 및 가공유통	▶ NCS분류체계 구분 원칙 준용 ▶ 포괄적인 개념으로 명칭 개선
중분류	3개 중분류 • 식음료조리서비스 • 식품가공 • 제과제빵	유지	▶ 신직업군 모두 포함 가능
소분류	7개 소분류 • 식품가공 • 식품저장 • 식품유통 • 제과·제빵 • 음식조리 • 식음료서비스 • 외식경영	총 9개 소분류 • 식품가공 영역에서 식품개발 추가 • 식음료조리서비스 영역에서 컨설팅 추가	▶ 자연식품 컨설턴트, 식문화 연구가, 푸드라이터, 다이어트 플래너 등 부상
세분류	29개 세분류	36개 세분류 • 식품가공분야 1개 추가 • 음식서비스분야 6개 추가	▶ 식품개발영역에서 신식품개발연구 추가 ▶ 식품가공연구는 식품가공에서 개발로 이동 ▶ 음식조리영역에서 퓨전음식 추가 ▶ 신형 외국 음식 조리 추가 ▶ 식음료서비스 영역에서 푸드스타일리스트, 조향사 추가 ▶ 컨설팅 영역에서 푸드컨설팅 추가 ▶ 다이어트 컨설팅 추가
능력단위	409개 능력단위	435개 능력단위 (26개 추가) • 식품가공 분야 11개 추가 • 음식서비스 분야 15개 추가	▶ 식품개발 영역에서 3개 신직업 부상 (기능성식품개발연구원, 발효음식 전문가, 소스드레싱 개발자) ▶ 식품가공 영역에서 4개 신직업 부상 (피클링전문가, 식품위험관리원, 브루마스터, 주스마스터) ▶ 식품유통 영역에서 3개 대상물별 바이어 세분화(수산식품, 농산식품, 축산식품) ▶ 제과제빵 영역에서 1개 신직업 부상(쇼콜라티에) ▶ 음식조리 영역에서 2개 신직업 부상 (퓨전음식조리, 신형 외국음식조리) ▶ 식음료서비스 영역에서 6개 신직업 부상 (소믈리에 세분화 3개, 바리스타 세분화 (큐그레이더), 푸드스타일리스트, 조향사) ▶ 외식경영 영역에서 4개 신직업 부상 (BM개발자·운영자, 매장관리사, 식품소비분석가) ▶ 컨설팅 영역에서 3개 신직업 부상(다이어트 플래너, 식문화 연구가, 자연식품 컨설턴트)

참고 3

식품산업 신직업(군) 참고자료 <'15년 전략수립 결과>

■ 식품산업 신직업(군) 발굴 : 총 32개 신직업군 후보 도출

조사방법	직업군	주요 직업군
메가트렌드 조사	12	식품영양사, 식품위험관리원, 식품공학전문가, 퓨전요리전문가, 마스터바텐더, 티 소믈리에, 다이어트 컨설턴트, 노인식품 설계사, 푸드테라피스트, 레스토랑 프로듀서, 푸드기획자, 푸드라이터
문헌고찰 및 공공 웹사이트 조사	13	기능성 식품개발 연구원, 쇼콜라티에, 신흥 외국 음식 조리사, 조향사, 푸드스타일리스트, 농수산식품바이어, 브루마스터, 소믈리에, 큐그레이더, 발효식품 전문가, 자연식품 컨설턴트, 퓨전음식 조리사, 피클링 전문가, 식문화 연구가
취업사이트 조사	6	식품산업 영업방법(BM) 개발자, 식품산업 영업방법(BM) 운영자, 매장 관리자, 다이어트 플래너, 주스마스터, 소스·드레싱 개발자
해외 직업군 조사	1	식품 소비 분석가
합계	32	

※ 신직업(군) 정의 : 식품산업에서 현재 일자리 수요가 새롭게 대두되거나 미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군)

■ 총 22개 신직업군 발굴 ⇒ 중점 육성 대상 5대 유망 신직업군 발굴

22개 신직업군	고용창출 가능성	인지도	기존직업 차별성	정책 부합성	5대 유망 신직업군
기능성식품개발연구원	△	◎	○	◎	◎
발효식품전문가	○	○	○	○	○
소스드레싱개발자	△	○	△	○	
피클링전문가	○	○	○	△	
식품위험관리원	△	×	×	◎	○
브루마스터	○	×	○	△	
주스마스터	○	○	◎	△	
농수산식품바이어	△	○	△	◎	◎
쇼콜라티에	△	△	×	×	
퓨전음식조리	○	◎	◎	△	
신형외국음식조리	○	◎	◎	△	◎
소믈리에	막걸리	○	△	◎	
	티	○	△	△	
	김치	○	○	◎	◎
큐그레이더	○	◎	○	×	
푸드스타일리스트	○	△	△	△	
조향사	△	○	○	△	
BM개발자	○	○	△	◎	○
BM운영자	○	○	△	△	○
매장관리사	○	○	×	×	
식품소비분석가	△	○	◎	◎	◎
자연식품컨설턴트	△	△	◎	△	
식문화연구가	△	△	◎	○	
다이어트플래너	○	△	○	△	○